
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2023. 3. 23.



제 주 대 학 교

입 학 본 부

차례

I 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	1
II 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	1
1.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	1
2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 등의 자체 규정	2
3.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	2
4. 선행학습 평가 일정 및 절차	2
III 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	2
IV . 문항 분석 결과 요약	3
V .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	3
■ 부 록	4
1. 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	4

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

대학별 고사 유형	입학전형			계열	모집요강에 제시한 출제범위 (과목명)	문항 번호	하위 문항 번호	계열 및 교과										교과 외
								인문·사회			수학	과학			영어	기타		
												국어	사회	도덕			물리	
면접 평가	수시 모집	학생부 종합	일반학생	인문·사회, 자연, 공학	해당 없음													
			소프트 웨어인재															

※ 위 면접평가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선행학습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문항카드를 작성하지 않음

○ (학생부종합 전형) 교과지식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1단계 평가자료에 대한 확인 면접

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1.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
구분	판단기준		
	항목	세부내용	이행 점검 결과
대학별고사 실시 관련 이행 사항 점검	1.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	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(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)	○
	2.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	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	해당없음
		③ 문항 제출 양식(문항카드) 작성의 충실성	
		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	
	3.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	⑤ 외부위원 포함 여부	○
		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등 포함 여부	○

2.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 등의 자체 규정

규정명	내 용	비 고
제주대학교 학칙	제32조의2(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) ① 대학입학전형에서 「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.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-
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	○ 영향평가의 목적, 정의,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○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	부록 참조

3.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
구 분	인원	비율	비 고
내부위원	4명	80.0%	입학본부 2명(당연직), 전임교원 2명
외부위원	1명	20.0%	현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1명 ※ 중등교육과 대입 진학지원 담당

4. 선행학습 평가 일정 및 절차

문항 수집 및 정리	➡	1차 분석	➡	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심의	➡	자체평가 보고서 대학 홈페이지 게재(공개)
2023. 3. 10.까지		2023. 3. 13. ~ 3. 17.		2023. 3. 21. ~ 22.		2023. 3. 24.

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

- (학생부종합)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체서류(검정고시, 외국고 등)를 바탕으로 1단계 평가자료 확인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평가영역별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으로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면접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<2022. 11. 17.~18.(대면), 11. 21.~24.(온라인)>

〔 면접활용 문항 (예시) 〕

- (전공적합성)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진로희망과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일치하지 않는데, 그 이유와 그렇게 기재한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?
- (자기주도성) ○○동아리 활동 상황 중 본인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?
- (인성·공동체 기여도) 최근에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거나 성취감을 느낀 일을 말씀해 보세요.

IV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- ◆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의 모든 면접평가에서 교과 지식과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체서류(검정고시, 외국고 등)를 확인하는 면접으로서, 수험생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의 면접평가 실시
- ▶ 교과 지식을 묻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았으며,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음

※ 문항카드: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문항카드를 작성하지 않음.

V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- (교과지식 문항 배제) 학생부종합(일반학생, 소프트웨어인재) 면접평가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문항 출제를 배제하는 등 선행학습 및 사교육 유발 요인 지속 차단
 - (전형방법 개선)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(의예과)의 면접평가 폐지
 - 학생부교과(일반학생, 지역인재) 전형은 전형취지를 고려하여 면접평가 폐지
- ※ 학생부교과(의예과) : ('21) 학생부 70%, 면접 30% → ('22) 학생부 100% → ('23) 학생부 100%
- (면접위원 교육) 교과지식을 검증하거나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되는 면접 질의 및 문제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면접평가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, 면접평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
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6. 12. 27. 규칙 제1499호

개 정 2018. 2. 28. 규칙 제1580호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제주대학교 학칙」 제32조의2 및 「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 규정」 제24조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선행학습”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시·도교육과정 및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.
2. “영향평가”란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대학별고사”란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·인성검사를 말한다.

제2장 영향평가

제3조 (영향평가 실시) ① 총장은 제2조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·체능 계열 실기고사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
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 (영향평가 결과의 공개) 총장은 제3조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장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

제5조 (기능) 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방법,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련된 사항

제6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입학본부장, 입학관리과장, 전임교원, 1명 이상의 현직 고등학교 교원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본부장이 되며, 전임교원과 현직 고등학교 교원은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입학관리과 주무자가 된다.

제7조 (임기) ①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임명하되,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평가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.

제9조 (수당 지급)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(2016. 12. 27. 규칙 제1499호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지침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으로 「제주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」은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「제주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지침」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위원에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당초 임명기간 또는 위촉기간으로 한다.

부칙(2018. 2. 28. 규칙 제1580호)

(제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제주대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학생처장”을 “입학본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학생처장”을 “입학본부장”으로 한다.

②부터 ㉔까지 생략

제3조 생략